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8. 04 (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8. 09.22 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8. 09.22 (월)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체육과장 이상진)

- 가.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평창군 체육진흥조례를 제정, 체육진흥기금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,
 - 우수지도자 확보로 학교 체육부터 직장부 체육부까지 우수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정신수양에도 기여하며
 -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등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여 평창군체육진흥에 관한 중 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평창군 체육진흥협의회를 둠.(안 제3조)
- 2) 협의회는 체육진흥계획 수립,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사항, 기금의 조성 관리에 관한사항,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, 기타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한다.(안 제5조)
- 3) 평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.(안제11조)
- 4) 기금 재원은 군 일반회계 출연금, 기금 운영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- 기금 조성은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으로 한다(안 제12조)
- 5) 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(안 14조)
- 6) 기금은 군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, 우수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, 군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, 도민소년체육대 회도민체육대회, 전국체육대회,국제대회참가, 우수선수 및 학교체 육 계열화사업 지원,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에 활용한다.(안 제15조)
- 7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"평창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용에 관한 조례"는 폐지함(안 부칙 제2호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김진영)

가. 본 조례안은 『국민체육진흥법』의 규정에 따라 군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구성과 체육진흥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체육진흥계획등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며,
- 체육진흥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출연금등을 통하여 10년의 기 간으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.
- 안 제4조(구성)을 보면, 15명 이내의 위원중 당연직이 의장을 포함하여12명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참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
-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제1항을 보면 "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"라고 규정되어 있으며, 우리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매년 5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재정부담적 측면에서 기금조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

고 사료되며,

○ 참고로 강원도 및 시·군의 경우 도와 12개시군이 10억에서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실업팀운영, 꿈나무 육성지원 및 지도자 배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
다. 결과적으로,

- 기타 관렵법령 적용이나 조문의 형식적 배열,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특별 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1부. 끝